

일제의 공문서 폐기 시론

— 국가기록원 소장 조선총독부 기록의 잔존성을 중심으로 —

A discourse on The Japanese Empire's destruction of official records :
Focusing on the persistence of the records of Government-General of
Chosen held by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이경용(Yi, Kyoung Yong)*

1. 머리말
2. 패전 전 일제의 공문서 정리와 폐기
 - 1) 식민지 대만에서의 공문서 정리와 폐기
 - 2) 일본 본토에서의 공문서 정리와 폐기
 - 3) 식민지 조선에서의 공문서 정리와 폐기
3. 조선총독부의 비밀기록 관리와 생산현황
 - 1) 조선총독부의 비밀문서 규정
 - 2) 조선총독부 비밀문서의 생산현황
4. 경찰서의 비밀문서 유형
 - 1) 평안남도 경찰서의 비밀문서
 - 2) 전라남도 경찰서의 비밀문서
 - 3) 충청북도 경찰서의 비밀문서
5. 맺음말

* 한남대학교 사학과 조교수(kyyi27@hnu.kr)

■ 투고일: 2020년 12월 31일 ■ 최초심사일: 2021년 01월 18일 ■ 최종 확정일: 2021년 01월 22일

■ 기록학연구 67, 205-236, 2021, <https://doi.org/10.20923/kjas.2021.67.205>

〈초록〉

이 논문은 남겨진 조선총독부 기록의 잔존성을 중심으로 전시체제가 일제에 의해 조직적으로 실행된 ‘의도된’ 기록 폐기 문제를 검토하였다. 일제 내각에서의 결정이 일본 본토와 식민지 등 제국 전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공문서를 대상으로 실행된 역사적 개연성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1930년대 후반 이후 아시아·태평양 전쟁으로 확대되고 전황이 악화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공문서 감축과 정리, 종이자원의 재활용 등 이미 기록 폐기를 위한 시스템이 준비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선총독부 기밀문서취급규정과 경찰서 처무규정 검토를 통해서 총동원계획과 관련한 기밀(비밀) 문서, 고등경찰 업무와 관련한 다양한 비밀문서의 존재, 그리고 이러한 비밀문서 중 상당수가 영구 또는 10년 이상 보존 기록에 해당된 사실도 확인하였다. 동시에 처무규정상 남아 있어야 할 문서현황이나 보존현황을 알 수 있는 각종 대장(부책)이 단 한 책도 존재하지 않는 현상을 밝히고 이를 패전 직후 조선총독부의 대대적인 공문서 폐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주제어 : 기록 폐기, 비밀기록, 조선총독부, 잔존 기록, 경무(경찰) 기록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cord destruction problem systematically implemented by the Japanese colonial rule during the wartime period, centering on the persistence of the remaining records of Government-General of Chosen.

It became clearer to recognize the historical probabilities that the decisions made by the Japanese cabinet were carried out on official documents in the same way throughout the empire, including mainland Japan and colonies. It was also confirmed that a system for disposing of records, such as reduction and organization of public documents, and recycling of paper resources, has already been established against

the backdrop of the situation where the war spread and the war situation worsened after the late 1930s.

In addition, it was attempted to extract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documents discarded by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rough a review of the regulations on handling secret documents of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en and the regulations on the police department. At the same time, it was found that various chiefs (subsidiaries) that could know the status of documents to be retained or the status of preservation according to the governmental regulations revealed that there was no single book, and this was directly related to the massive destruction of official documents by the Joseon Governor-General immediately after defeat.

Keywords : destruction of official records, Government-General of Chosen, records left, secret records, police records

1. 머리말

일제는 패전 직후 제국 본토는 물론 점령지와 식민지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공문서를 폐기하였다. 전황의 추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의 제국 군대와 행정기관들의 기록 폐기 양상은 조금씩 달랐지만, 전보·전화 등 지령을 통해 전격적으로 '소각' 처분했다는 점에서 일관성을 보인다. 제국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실행된 공문서 폐기 행위는 일본 본국에서의 군대에 의한 소각 사례(하라 츠요시 1998, 56-57)나 중국 동북지방에서의 소각 폐기(이무라 테츠오 1997, 1-2) 사례 등을 통해 많이 알려졌다.

일본 제국의 병참기지 식민지 조선에서도, 1945년 8월 15일 정오 일왕의 '항복 선언' 방송 청취와 '태산이 무너진다 해도 최후까지 맡은 바 직임을 다하자'라는 총독의 '유고(諭告)' 낭독 이후, 조선총독부에 의한 대대적인 '중요서류의 정리 소각'이 시작되었다.(모리타 요시오 1964, 73-75) 현재 국

가기록원에서 보존하는 조선총독부 기록물은 일제 패전 직후에 자행된 대대적인 기록 소각으로부터 살아남은 ‘잔존’ 기록이다. 이 ‘잔존’ 기록들은 계획적이고 철저한 ‘소각 폐기’ 대상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의도적’으로 ‘선별’되어 남겨진 것이다.

총독부 ‘잔존’ 기록의 파편화 문제는 한일 양국 연구지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지수결 2005, 21; 무라카미 카츠히코 1997, 19-22) 특정 연도나 업무에 따른 기록 불균형의 심각성은 총독부 각 부국과 업무분장과 대조할 때 단 한 건의 기록도 남기지 않은 조직들이 많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흔히 ‘총독부 문서와 보존본’이라는 조선총독부 본부가 ‘남겨준’ 기록의 경우¹⁾, 수리조합·토목·토지개량·임정·지방행정·광무 등 주로 인허가나 행정증빙 관련 기록의 비중이 절대적이다.²⁾ 이는 정부수립 이후 국가기록원이 중앙과 지방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수집한 ‘일정(日政) 문서’도³⁾ 마찬가지여서 교육(졸업생 명부), 법무(판결문), 내무(인사 및 지방행정) 관련 문서가 대부분이다. 이렇듯 국가기록원 소장 ‘잔존’ 총독부 기록은 일제의 식민정책 입안 과정이나 정책 실행과 관련한 중요 기록 자체가 매우 적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물론, 잔존된 총독부 기록 중 일부는 식민통치 행위에 대한 구체적 정보 파악에 유용하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가치 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내무국 지방행정 문서 중 『서무에 관한 잡서류철』은⁴⁾ 1940년도 ‘생산분’

-
- 1) 국가기록원 소장 ‘잔존’ 총독부 기록 가운데, 총독부 문서과에서 보존하다 미군정기를 거쳐 정부수립 이후 한국 정부에 일괄 인계되었다는 1만 4,000여 권을 말한다.
 - 2) 농림국의 토지개량·수리조합·임정, 내무국의 지방행정, 토목 관련 등 주로 인허가 관련이나 행정증빙 관련 기록이 대다수이며, 이 중 수리조합, 토목, 토지개량 관련 기록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 3) 문서만으로도 약 3만권에 달하는데, ‘총독부 문서와 보존본’까지 합하면 국가기록원 소장 총독부 기록은 모두 문서 4만 4천여 권과 도면 등 약 100만매 정도로 추정된다. 참고로 국가기록원의 조선총독부기록물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통계(2008.12 현재)로는 문서 약 3만 3천여 권과 도면류 85만여 매였다. 2020년 12월 현재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의 ‘정부수립이전기관’ 통계로는 833,482철인데, 여기에는 간행물과 도면, 통감부 시기의 공문서 일부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여타 문서철들과 달리 지방과의 정책 기획 관련 문서나 일본 내각 타부서와의 왕복문서들이 편철되어 있다.(지수결 2006, X X) 또한 단일 사안과 관련된 문서들이 함께 편철된 문서도 일부나마 존재한다. 법무국이 생산한 『조선기류령에 관한 서류』⁵⁾도 그 중 하나로, 조선총독부가 조선인 강제 징병을 목적으로 제정한 「조선기류령」 공포와 관련해서 발생한 업무 과정 문서 모두가 편철되어 있기 때문이다.(이승일 2007, 263-264) 그러나 이러한 일부 예외적인 사례들만으로 잔존된 총독부 기록의 파편적 성격과 ‘결락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특히 징용, 징병, 공출 등 전시총동원 정책의 실상을 보여주는 기록이나 민족해방운동 단체 및 인물에 대한 사찰 기록, 대중운동이나 결사체, 종교단체에 대한 조사 기록 등 경찰 계통의 업무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곽건홍 2005, 246-247) 더욱 그러하다.

‘잔존’ 기록으로서의 총독부 기록이 보여주는 결락과 파편화의 원인은 일제의 기록관리 제도 자체가 가지는 기형적인 집권성과 비밀주의, 그리고 이에 토대한 편철방식의 형식성에서도 찾아진다. 우선 구조적으로 사안(사건)의 전말을 제대로 알 수 없게 하는 유형별·보존기간별 편철제도 운영을 들 수 있다.(김익한 외 2005, 334) 또한, 법령·예규·인사 등의 기록을 영구문서로 보존하는 반면 보고서나 회의록 등 과정과 경위를 알 수 있는 기록은 한시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토 2005b, 107)인 점에서도, 일본 외무성의 전시체제하 기밀문서 관리 방식을 볼 때 ‘무엇이 비밀인지조차도 비밀’로 관리하는 제도(치바 2015, 173-174)인 점에서 그 한계가 분명하다.

그러나, 특정 부서와 업무 기록의 편중성이 극심한 총독부 기록이 보여주는 파편적이며 결락적 특징은 근본적으로는 ‘패전기 조선총독부에 의한 대대적 소각 처분’ 행위에서 기인한다. 일제 식민지와 점령지역에서의 이러한 의도적인 ‘기록 멸실’ 행위에 대해서는 1990년대 중후반기 일본 근대사 전공자들의 ‘해외 소재’ 일제 자료에 대한 소재 파악과 해당 기록 정보의 이

4)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JA0003872.

5)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JA0004278.

용을 위한 학술활동 과정에서도 조명되었다.(이무라 테츠오 편 1997) 이들은 1940년대 기록의 잔존량이 매우 적다는 점과 ‘총독부 기본정책이나 그 과정을 알 수 있는 기록’이 부존재한 이유를 전시통제기 식민지와 점령지 등에서 자행된 대대적인 기록 소각과 관련지어 해명하고자 했다.

지금까지 패전기 일제의 공문서 소각에 대해서는 주로 일본 본토에서 특히 육군 중앙에 의해 대대적으로 소각 명령이 실행되었으며⁶⁾ 전시의 병력 동원 체제에서 실제 행정 집행 기능을 수행했던 지방행정 관청의 병사 관련 문서들이 집중 소각된 점들이 중점적으로 규명되었다.(요시다 유타카 1996; 하라 츠요시 1998; 아마모토 카즈시게 2004; 우시키 유키오 2007; 하시모토 요 2012; 키라 요시에 2015; 곤도 타카키 2015; 가토 기요후미 2019) 그러나 식민지 조선의 경우, 여타 ‘점령지’와 일본 본토 사례를 결부시키거나(가토 기요후미 2002) 대만과 조선총독부의 문서관리 제도와 관련지어서 부분적으로 언급하고(가토 기요후미 2005a; 2005b) 있을 뿐이며, 국내에서의 연구도 전무한 실정이다.

그런데, 식민지에서의 정책 수립과 집행은 그 자체 내에서 완결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제국 본국과의 수직적인 연관 구조 속에서 중층적이고 종속적인 과정을 통해 실행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제국 정부와 조선총독부 간 제령이 제정되는 과정(이승일 2006; 김경남 2011), 식민 지배를 위한 법령·정책·인사 관련 결재문서의 원본 출처(김경남 2014; 2015) 등을 다룬 연구는 이러한 사실을 기록학과 역사학적 방법론을 통해 실증한 것이다. 제국 본국과 식민지를 동일한 시공간 속에서 파악하려는 이러한 연구 관점은 일제의 기록 폐기 문제를 고찰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이는 전쟁과 분단, 그리고 급격한 도시화와 정보화 사회로 전환된 한국 사회에서 일제 당시의 기록 소각과 폐기에 대한 증거 기록이 찾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

6) 특히 하라 츠요시는 큐슈 지방의 방위를 담당한 제16방면군사령부의 소각명령 정보와 가고시마 주둔의 독립혼성 제125여단의 소각명령 사본을 통해 육군 중앙의 소각명령이 일본 전역의 말단부대에 전달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규명하였다.

서 더욱 그렇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우선 일제 본국과 외지에서
의 기록 폐기 사례를 재구성한다.⁷⁾ 이는 전시체제기의 기록 폐기가 일본
제국이라는 동일한 공간 속에서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음을 논증하기 위함
이다. 이를 통해 당시의 정황들이 보여주는 개연성이 더욱 분명해지는데,
본문에서는 몇몇 잔존 기록을 ‘발굴’하여 식민지 조선의 지방 말단까지 실
행되는 당시 상황을 증거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제의 기록 소각과 폐기
가 패전 직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시체제기 내내 ‘단계적’으로 준
비·실행되는 연속성을 띠었다는 점도 함께 밝혀질 것이다.

패전 직후의 공문서 폐기와 관련해서 총독부 비밀문서의 관리나 소각 처
분된 기록의 유형 등에 대한 규명은 현재로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비
밀기록을 둘러싼 특정 문서의 유형과 내용은 물론 비밀문서의 관리에 대해
서도 많은 부분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본문에서는 잔존 기록
속에서 ‘확인’된 조선총독부의 비밀기록 관련 규정들과 함께 경무(경찰)의
비밀문서 유형 등을 검토하는 방법을 통해 당시의 ‘문서관리 규정상’ 당연
히 보존 관리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잔존’ 총독부 기록에서는 찾
을 수 없는 기록을 ‘역으로’ 추적하고자 한다.

이번에 ‘잔존’ 총독부 기록 중에서 새롭게 ‘확인’된 규정들은 1930년대 조
선총독부가 비밀문서 규정을 제정했던 시대적 배경을 알게 해주는 한편 패
전 직후 집중적으로 소각되었던 ‘기밀문서’의 유형과 내용에 대한 실마리를

7) 일제의 점령지와 식민지에서의 기록 폐기 양상을 비교해가며 제국 전역에서의 다양한
전개 양상과 특성, 그리고 각 사례에 대한 구체성을 실증하려는 가토 기요후미의 연구
로부터 많은 시사를 받았다. 그런데, 가토는 대만과 조선총독부 기록이 ‘상당량’ 잔존하
고 공문서 폐기에 대한 ‘증인’ 외에 다른 결정적 물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대만과 한국 정부의 총독부 기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의 폐기·유실 가능성도 동시에
제기하였다. 이는 한국전쟁이나 1960·70년대 한국정부의 보존문서 정리 등을 고려하
면 당연히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이다. 그러나 일제의 공문서 폐기 문제는 다른
무엇보다 제국 전역의 동일한 시공간 속에서 실행되는 구조와 상호연관성이 가지는 개
연성, 그리고 잔존 기록의 극심한 결락성 등을 전제로 그 전체적 현상 파악과 특성 규
명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공해 줄 것이다.⁸⁾ 또한, 경찰서 처무규정에서 확인되는 비밀문서의 존재와 유형을 통해서 경무 관련 기록의 결락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규명하고, 그런 점에서 현재의 잔존 총독부 기록의 성격과 특징을 보다 분명하게 해 줄 것이다.

2. 패전 전 일제의 공문서 정리와 폐기

1) 식민지 대만에서의 공문서 정리와 폐기

대만총독부는 1944년 3월에 종전의 문서취급 규정의 내용과 ‘근본적으로 다른’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존연한의 대폭적 조정과 문서과장의 판단에 의한 기록 폐기를 수월하게 하는 것이었다. 곧 종전 ‘영구·15년·5년·1년’의 보존연한을 ‘영구·1년’의 2종류로 바꾸는 한편 “비록 영구보존 문서라 할지라도 문서과장이 보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무 국부과장과 합의 후 총무장관 승인을 거쳐 폐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⁹⁾ 이는 실제로는 종전의 15년 보존 대상을 영구로 상향 조정한 것이지만, 종전 규정의 ‘문서를 원칙으로서 폐기하는 것’에 비해 새 규정에서는 ‘문서는 폐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8) 이러한 점에서 관련 규정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몇몇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잔존’ 비밀문서를 통해 경찰 기록의 유형과 특성, 관련 제도가 가지는 성격 등을 규명하고자 했던 박성진(「식민지권력의 비밀기록 생산과 활용」, 2007)의 연구는 분명 선구적이었다. 그러나 자료로 활용했던 통감부기 비밀문서나 인비(人祕) 문서를 제외하면, 경무(경찰) 업무와의 상호 관련성도 찾기 어려운 극히 일부의 단편적인 ‘잔존’ 문서만으로는 조선총독부의 비밀기록 제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조선총독부의 비밀문서에 대해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비밀기록의 보유기간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모호성은 결국 자의적 처리가 일반적이었을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했다는(310쪽) 결론에 그치고 말았다.

9) 1944년 3월 12일자 훈령 40호, 「대만총독부문서취급규정중개정」, 『대만총독부관보』 제 583호.

만큼(히야마 유키오 2002, 244-245), 악화 일로로 차단던 전황(戰況)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현존하는 대만총독부 기록에서는 이때 개정된 '규정'과 관련한 더 이상의 자세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때 문서취급 규정을 개정한 보다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만총독부 문서취급규정의 개정과 연동되어 추진되었던 대만척식주식회사의 「문서편찬보존규정 일부 개정의 건」의 '(개정) 이유와 요강'을 통해서 파악해보자.

1. 대만척식 결전(決戰) 비상조치 요강 제5호에 있는 보유물자의 적극적 활용의 취지에 기초해 보존문서의 보존연한을 재검토하여 보유물자를 공출하고 이것의 이용재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문서의 보존연한을 영구 및 1년 보존의 2종으로 구분. 다만, 규정의 (표면상의) 방침상 영구보존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영구보존으로 되어 있는 문서에 관해서는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때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3. 본 개정의 주안점은 보존 물자의 공출에 있고 현행 규정에 의해 공출해야 할 문서도 상당히 있다고 예상됨에 따라 본 개정에 의해 쓸데없이 영구보존의 양을 많게 하는 일이 없도록 문서의 편찬 및 보존에 관한 주관과인 문서과에서 적절한 처리를 강구할 것.

이에 의하면, 이때의 문서편찬 규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대만척식주식회사의 「결전 비상조치 요강」 제5호의 '보유물자의 적극적 활용'에 따르는 종이 자원의 공출과 이용 재생을 위한 것이었다. 곧 전세 악화에 따른 자원 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보존 물자 공출' 차원에서 대만 식민 통치 기관들의 공문서를 감축·폐기해서 재활용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대만척식의 1945년 1월 13일자 「서류정리 및 가연성 물질 정리에 관한 건」에서 1944년 9월 이후부터 중요문서에 대한 소개와 '불필요 문서' 정리를 지

속적으로 ‘독려’하는 상황이 확인된다.(가토 기요후미 2005b, 123-126) 기밀문서는 원칙적으로 ‘소각’하고 영구 기록을 포함한 ‘불필요 문서’는 폐지회사에 매각하는 방식을 통해 종이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방향이었다.

그런데 이는 제국의 외지인 식민지 대만에서만 실행된 것이 아니며 일본 본국의 내각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정책에 따라 제국의 본토와 식민지 조선에서도 실행된 여러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2) 일본 본토에서의 공문서 정리와 폐기

일본 내각은 패색이 점차 농후해지는 상황에서 1944년 2월 25일 「결전비상조치요강」(決戰非常措置要綱)을 제정하였다.(가토 기요후미 2005a, 15-18) 이 요강은 학도동원체제의 철저, 방공체제 강화, 간소생활 강화, 중점수송의 강화, 평시적 또는 장기계획적인 사무·사업의 정지, 중앙감독사무의 지방위임, 관청휴일 감축 등 17개 항목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그 가운데 “보유물자의 적극적 활용 공출을 피하기 위해 관공서, 회사, 가정 등에서의 물자의 보존연한 등을 극도로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3번째 항목 ‘보유물자의 적극 활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보유물자’는 물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자원으로서의 ‘공문서’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2월 25일의 각의결정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2월 28일 열린 차관 회의에서는 「관청의 문서물품 등의 정리 및 그 적극적 활용 공출에 관한 건」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 결정에서는 ‘관청의 공문서’를 중요한 전시물자로 취급하면서, “관청 문서의 철저한 재검토를 통해 꼭 필요한 것 이외는 모두 폐기해서 재생지 원료로” 사용할 것과 이를 위한 “문서보존에 관한 규정의 신속한 개정” 등 구체적 실행 조치가 담겨 있었다.

제국 내지의 아이치현에서는 ‘보존문서의 철저한 정리감축을 철저하게 관철시켜 감으로써 각의결정사항인 비상조치요강의 취지에 응’하기 위해 1945년 3월 29일 영년보존문서 6천여 책을 포함 모두 15,581책에 달하는

대대적 문서 폐기(실제적으로는 매각)이 실행되었다.(가토 기요후미 2005a, 20) 그런데, 아이치현에서는 이미 1943년 후반 이후 전황 악화에 따른 물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기관들의 공문서 폐기 조치가 일반화되고 있었다. 곧 아이치현청의 1943년 11월 「보존문서정리에 관한 건」에 의하면, 이때의 공문서 폐기 이유는 금속 공출로 인해 지금까지 문서를 보관했던 철제 책장을 목제 책장으로 교체했음에도 수납 공간이 여전히 부족한 관계로 ‘불필요 공문서’를 폐기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계속되는 전황 악화에 따라 아이치현청에서는 1943년~1945년 방공(防空)상 ‘가연성 물질의 철저한 정리 차원’에서, 나고야시 교외 지역으로의 문서의 분산 소개가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단계적 문서 폐기’가 이루어졌다.

대만총독부와 아이치현 사례는 전시체제기 일제의 공문서에 대한 기본 인식과 그에 따른 공문서 처리 상황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대적인 공문서 소각이 행해졌던 패전직후 이전에도 전황 악화를 배경으로 하는 일련의 ‘공문서 폐기 시스템’이 마련되고 실제로 작동되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제국의 「결전비상조치요강」에 의한 방침의 존재와 제국 본국의 지방 행정기관과 제국 외지의 식민통치 기관에서의 작동 기제가 확인된 것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패전을 계기로 제국으로부터 이탈·분리된 지역에서는 그러한 구체적인 ‘증거’ 문서나 정황을 찾을 수 없는 반면, 제국 역사와 기억의 연속선상에 있는 제국 본토에서는 여러 지방에서 잔존,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3) 식민지 조선에서의 공문서 정리와 폐기

식민지 조선의 경우는 어떠했는가? 현존하는 총독부 기록에서는 1945년 3월 22일자 의 통영군수가 각읍면장과 각공립국민학교장 앞으로 보낸 「결전비상조치요강에 관한 건」이 찾아진다. 이 공문은 ‘별지’에서, ‘관공서의 상

시집무 등에 관한 건, 관공리 등의 출장제한에 관한 건, 관공서의 문서물품 등의 정리 및 적극적 활용에 관한 건을 제시하면서, 각 관공서별로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앞에서의 대만총독부나 아이치현 사례와 내용상 유사하면서도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¹⁰⁾

관공서의 문서물품 등의 정리 및 적극적 활용에 관한 건

1. 관공서는 보존문서를 철저히 재검토하여 진짜 필요한 것 이외는 모두 폐기할 것. 관공서는 문서보존에 관한 규정 등은 필요에 따라 속히 개정할 것. 폐기문서는 이를 재제지(再製紙) 원료로 할 것.
2. 관공서는 보관물품을 철저히 재검토하여 진짜 필요한 물품 외에는 전환용(轉活用) 할 것.
3. 전항의 불용문서 및 물품 활용에 관해서는 관공서별로 속히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정해서 가능한 속히 실시에 옮길 것.

이 문서는 일제의 내각 결정이 식민지 조선의 지방행정 말단까지 전파·지시되는 모습을 확인해준다는 점에서 증거적 가치를 지닌다. 통영군수의 이러한 지시에 일운면에서는 폐기처분을 요하는 보유문서 뒷면을 활용해서 동리(洞里)로 하달하는 통첩이나 통지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재생용지 원료로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조선총독부 본부의 경우는 회계과장이 각 과실장 앞으로 보낸 “종래 소 각처분에 부쳤던 기밀공문서 등사쇄(謄寫刷) 또는 압수 관련 신문잡지 등은 ‘시국 형편상(時局柄) 이를 활용하고자 하니, 귀과에서는 이와 유사한 문서의 다소에 상관없이 오는 9월말까지 통지해주기 바란다”는 1941년 9월 25일자 공문과 이에 대한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답신¹¹⁾ 말고는 대만과 아이치현 사례와 같은 ‘결전’과 관련한 비상조치 상황을 보여주는 기록은 찾

10) 『기밀서류』(CJA0024526)

11) 『폐기서류에 관한 건』(『타관청관계서(각도)』, CJA0015729)

아지지 않는다. 1941년 현재 전선이 확대되고 전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밀문서(등사본) 등에 대한 ‘활용’ 방침이 하달된 정황만이 확인될 뿐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일제가 전시체제기 전쟁물자 동원 차원에서의 공문서의 폐기 활용이라는 방침을 마련하고 이를 제국 전역에서 실행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1940년대 초반부터 실행된 ‘공문서 재활용’과 관련한 이러한 경험의 축적은 후술하는 비밀문서에 대한 보안상의 철저한 관리와 연계되어 패전 직후의 대대적인 소각과 폐기를 예비하는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3. 조선총독부의 비밀기록 관리와 생산현황

1) 조선총독부의 비밀문서 규정

일제는 1945년 8월 14일 내각회의에서 ‘기밀문서’를 대대적으로 폐기하기로 결정하였다. 향후 전범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증거가 될 공문서는 전부 소각’ 시킬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연합군, 그 중에서도 최대 피해국인 중국측에 의한 ‘상당한 보복’ 행위를 예상한 가운데 내려진 것이었다.¹²⁾ 이 결정에 따라서 일제의 각 성청은 물론 지방관청에서의 조직적이고 대대적인 기록 소각이 실행되었다. 특히 일본군은 같은 날 육군대신 명령으로 전 부대에 ‘각 부대가 보유하는 기밀서류를 신속하게 소각할 것을 지령하였는데, 적에게 넘어갈 우려가 있는 “외사, 방첩, 사상, 치안 등의 관계문서, 국력 판단이 가능한 여러 자료 및 비밀역사” 등이 우선 소각 대상이었다.’(하라 츠요시 1998, 56-57)

12) 패전 당시 내무성 지방국 전시업무과 사무관 오쿠노 세이스케(奥野誠亮, 나중에 문부상과 법무상을 역임한 인물)의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2015.8.11.)와 당시 스즈키 내각의 재무상(藏相)이었던 히로세 토요사쿠(廣瀨豊作)의 증언에 토대한 것으로, 모두 가토 기요후미 논문(2019) 3-4에서 재인용함.

조선총독부도 예외가 아니었다. 패전 직후 일본 내각의 지시하에 대대적으로 소각되었을 조선총독부의 ‘기밀문서’는 어떠한 것들인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없으며, 잔존하는 총독부 기록 중에 극히 일부 남아있는 ‘비’나 ‘극비’ 표시의 몇몇 문서를 통해 그 대강을 짐작할 뿐이다. 그런데, 조선총독부의 경우 대만총독부나 사할린 등과 달리 문서관리와 관련된 규정들을 ‘내부 훈령’(內訓)으로 ‘공표’하기에 처무규정상 반드시 존재해야 할 총독부 본부의 ‘편찬유별 및 보존종별’은 지금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기밀문서와 관련한 규정 역시 마찬가지이다.¹³⁾

여기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조선총독부의 기밀문서 관리 규정과 관련한 제정 과정과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패전 직후 총독부가 대대적으로 소각한 ‘기밀문서’의 유형을 추정하고자 한다. 1941년 3월 「조선총독부기밀문서류취급규정」(이하 기밀문서규정)이 제정되었다. 1930년대 후반 본격적인 대륙 침략을 전후로 해서 식민지 전역에 강제되는 전시체제기 국가총동원 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¹⁴⁾ 그런데, 식민지 조선에서 기밀문서 관련 규정이 제정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다. 이미 1930년 6월 12일 「총동원계획에 관한 기밀서류취급규정」(총독부 내훈 제7호)을 제정하였고, 1931년 12월 22일에는 「조선총독부부내(部內) 총동원관계 기밀문서류취급규정」(총독부 내훈 제15호)으로 다시 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들은 일제가 이미 만주를 침략하기 이전에 제국 본국과 조선의 각종 자원에 대한 통제를 시작하고 총동원계획을 준비한 사정을 짐작케 한다.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전쟁과 관련한 동원정책이 1930년 이전인 1929년 자원조사법의 시행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으며, 강력한 배타적 권력 행사

13) 조선총독부 ‘기밀문서규정’은 『제국의회설명자료』에 실려 있었기에 그 존재를 알게 되었다. (민족문제연구소 편, 2000.11, 소화16년 제79회 제국의회설명자료(관방문서), 308-334, 『일제하 전시체제기 정책사료총서』 제6권)

14) 조선총독부 관방문서과는 제79회 제국의회에 기밀문서규정을 관련 자료로 제출하면서, “대륙병참기지(로씨의) 반도의 특수성에 비추어 국가기밀문서 취급에 특히 신중을 기하기 위해” 제정했다고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가 가능했던 조선총독부에 의해 일본 본국에서는 책정되지도 못한 생산력 확충계획이 실행되었다.(안자코 유카 2006) 본국에서의 자원조사법 발동에 따른 식민지 조선에서의 자원조사령 시행과 관련된 총독부의 기밀문서 관리를 해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때 총동원계획 관련한 군사상의 기밀사항과 관련 문서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선총독부 총동원관계 군기문서취급규정」(1931년 12월 22일 총독부 내훈 14호)도 제정되었다.¹⁵⁾ 그런데, 이 규정들에서 정하고 있는 ‘총동원기밀취급’이나 ‘군기취급’이 표기된 기밀문서는 잔존 총독부 기록에서는 찾아지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총동원 체제하에서 ‘기밀’로 취급되어야 할 기록들은 어떠한 것들인지, ‘전시의 종합국력의 확충운영에 관한 안’을 기초하고 ‘국가총동원계획의 설정 및 수행에 관한 각 청 사무의 조정통일’을 담당했던 기관인 일제의 기획원의 ‘총동원기밀문서’ 규정을 통해서(나카노메 토오루, 쿠마모토 후미오 2009, 304-305) 그 내용을 추정할 수 있다.¹⁶⁾

1. 총동원계획(물자, 노무, 교통, 자금, 무역, 경비 등에 관한 각종 총동원계획을 포함)
 - 가. 계획의 설정방침, 설정사무요령, 기타 설정사무에 관한 중요 사항
 - 나. 계획강령
 - 다. 계획목표, 수급대조, 기타 계획화되는 계수(計數)
2. 생산력확충계획에 관한 사항
 - 가. 계획의 설정방침, 설정사무요령, 기타 설정사무에 관한 중요 사항
 - 나. 기본계획
 - 다. 연도별, 산업별 실시계획

15) 이 규정들은 『자원조사철(기밀문서반환일괄)』(CJA0002453)에 편철되어 있다.

16) 「기획원총동원기밀취급규정(초)」(소화14년12월20일 總裁文連 제2호).

3. 전 각호에 관한 회의의 중요의사

4. 기타 총동원기밀을 유지(保持)함에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우선 ‘총동원기밀’은 생산력확충 계획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 본국과 조선총독부 등 외지의 중앙 성청급 기관들의 총괄적 계획 수립은 물론, 수직적 위계 구조하의 말단에 이르기까지 각 지방행정 단위 마다 연도별 또는 산업별 실행계획, 그리고 목표 설정 및 그에 따른 각 분야별 실적 보고 등을 통해 전시체제기 이전의 총동원계획(이른바 ‘잠정총동원기간계획’)과 전시체제기 총동원계획에 관련한 많은 기밀문서들이 생산되었음은 분명하다.

1941년 3월의 기밀문서규정의 제정은 전시체제기에 군기보호법이나 군용자원기밀보호법 등 여타 비밀 관련한 개별법들이 제정되는 상황에서, 비밀 기록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며 일관되고 엄정한 관리를 위해 앞서의 ‘총동원관계’에 한정된 규정들을 재정비하면서 새롭게 제정한 것이었다. 모두 6장 39조와 부칙(40조)으로 구성된 기밀문서규정에서 정한 기밀의 종류와 중요한 처리 절차 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밀은 총동원기밀문서, 군용자원비밀문서, 보통기밀문서 등 3종류가 존재하며, 각 기밀문서에는 표지 또는 테두리를 적색으로 표기하고, 자물쇠가 달린 견고한 용기에 격납, 보관하고 외부 반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한다.¹⁷⁾ 둘째, 기밀문서 관리 체계에 대한 내용으로, 문서과장을 ‘총괄주임관’, 각 부국 및 관방 각 실과의 경우는 고등관 중에서 ‘취급주임관’을 지명하여, 기밀문서의 수발과 보존상의 철저한 관리 책임을 부여하였다. 셋째, 일본 내지와 외지의 타 관청으로부터 기밀문서를 수취하면 문서과장은 『기밀문서접수부』에

17) 총동원기밀문서에는 ‘지정총동원기밀’, 군용자원비밀문서에는 군용자원비밀보호법시행령부도에서 정한 표기인 ‘군자비’(軍資秘) 또는 ‘일부군자비’, 보통기밀문서에는 ‘기밀취급’ 등의 표식을 반드시 붙이도록 규정되었다.

등록한 뒤에 해당 부국 등의 취급주임관에게 배포하며, 각 취급주임관은 각 부국 등의 『기밀문서수수보관부』에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배부받은 기밀문서의 출입 및 보관상황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넷째, 기밀문서를 작성한 때는 『기밀문서작성보관부』에 기밀문서의 작성, 출입 및 보관상황 등을 기재해서 관리하도록 했다. 다섯째, 총괄주임관은 『기밀문서보관총괄부』를 만들어서 총독부 본부의 기밀문서 보관상황에 관한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여섯째, 매년 9월 30일까지의 각 부국 등의 기밀문서 현황을 10월 15일까지 총괄주임관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이 현황을 토대로 다른 청이 작성한 기밀문서 현황을 해당 청에 통지함으로써 기밀문서의 ‘수발 및 보유 현황’을 상시 적으로 파악하였다. 일곱째, 총괄 주임관은 매월 말 현재 「기밀문서 작성 월보」를 일본 본토의 기획원에 보고한다.

이상에서 본격적인 전시체제로의 전환을 전후로 해서 국가총동원 정책 실행에 관련된 기밀문서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되었음이 확인된다. 이를 배경으로 조선총독부는 문서과장(총괄주임관)과 각 부국과의 취급주임관을 중심으로 생산과 보관 등의 관리 현황 보고에 기반해서 엄정한 ‘보안 통제’가 이루어지는 체계였다. 특히 매월 기획원에 ‘기밀문서 작성 현황’ 보고 원칙은 일제의 기밀문서에 대한 집권적 관리 체계의 특성과 그 ‘비밀주의’적 성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일반 기록과는 달리 필요가 없어지거나 보존기간이 경과하는 때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기밀기록의 경우, 철저한 별도 관리와 보안 통제 상태에서 보존되었다. 이러한 별도 관리와 통제는 패전 직후 대대적인 소각 처분을 용이하게 하는 이유로 작용되었을 것이다. 기밀문서규정에 의해 생산·보존되었을 ‘지정총동원기밀’, ‘군자비’(軍資秘), ‘일부군자비’, ‘기밀취급’ 등의 표시가 있는 문서 역시 현재의 총독부 기록 속에서는 찾아지지 않는다. 전시체제가 조선총독부에서 ‘국가총동원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종합사무, 시국에 긴요한 물자의 배급과 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핵심 부서로 신설된 총독관방 기획부의 ‘잔존’ 기록은 담당했던 업무의 중요성에 비

해 너무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극비’ 도장이 찍혀 있는 일부 기록만이 확인 될 뿐이다.¹⁸⁾ 이렇듯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해서 물자, 노무, 교통, 자금 등 여러 분야에서 실행된 식민지 조선에서의 강제 동원과 수탈 과정을 증거하는 많은 문서들이 ‘기밀’로 철저히 관리되다가 패전 직후 우선적으로 소각 처분되었다.

잔존 총독부 기록에서는 당시 생산된 기밀문서는 물론 기밀문서 관리를 위해 문서과가 작성한 『기밀문서접수부』, 『기밀문서보관총괄부』, 일본 본국에 달마다 보고하는 월보 자료, 그리고 각 부국과의 『기밀문서수수보관부』, 『기밀문서작성보관부』 등 이른바 총괄목록류가 존재하지 않는다. 문서 관리에 필수적인 부책류의 부존재 사실은 역설적으로 ‘기밀서류’ 소각의 철저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총괄부책 역시 패전 직후 함께 소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함경북도 문서편찬구분에 의하면,¹⁹⁾ 『비(秘)문서 건명부』는 갑종(영구), 『기밀관계서류』는 을종(10년), 『기밀문서교부부』는 정종으로 구분하였다. 총독부 본부와 도 단위에서의 비밀문서에 대한 보존 기간 책정이 동일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문서과의 ‘총괄부’과 각 부국과의 ‘작성보관부’는 영구보존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²⁰⁾ 조선총독부의 이러한 부책류의 부존재는 후술하는 일반 기록의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는 점으로, 기밀기록의 생산현황이나 유형, 규모 등 유용한 많은 기록 정보를 단

18) 국가기록원의 조선총독부 기록 중 ‘경금속’으로 분류되어 있는 일부 문서철은 총독관방 기획부가 생산·접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밀문서규정상의 ‘기밀취급’ 등이 표시된 문서는 역시 남아있지 않다. 또한 일부 ‘극비’자료가 첨부되어 있는 문서철들도 일제 본국의 기획원 등에서 보낸 시행문이 대부분이며, 심지어 편철되어 있어야 할 ‘극비’의 실제 내용을 알 수 있는 ‘첨부문서’는 통째로 빠져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 『화약 관계철』(CJA0012855), 『수송계획조서』(CJA012861) 등이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표지 이미지파일의 가독성이 떨어지고 원본을 볼 수 없어서 단정할 수는 없으나 내용상 대부분 을종문서일 가능성이 높다.

19) 「함경북도문서편찬구분」 1932년(소화7년, 6월 15일 훈령 제7호), 제국지방행정학회발행 『함경북도예규집(내무)』

20) 조선총독부 문서규정에 대해서는 이경용의 중앙대박사논문(2002)과 조선총독부의 기록 관리제도(2005)를 참조할 수 있다.

기간에 '효율적으로' 없앨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기록학적 접근이 요청되는 부분이다.

2) 조선총독부 비밀문서의 생산현황

조선총독부가 생산·관리하는 기밀문서의 전체 규모는 얼마나 될까? <표 1>은 1941년의 제79회 제국의회에 총독부 관방문서과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1941년도는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212일간의 통계에 불과하므로 대신해서 1940년도의 '극비문서수발통수'와 '일반문서수발통수' 합계를 비교해보면, 관방 85,767건, 외사부 52,737건, 기획부 88,000건의 일반문서 수발 합계 대비 1:5 정도의 비율을 보인다. 일반문서 수발통계의 전체 합계는 1,174,063건으로 기밀문서 합계 234,807건을 대비하면 평균 약 5배에 해당된다. 이는 전체 일반문서의 1/5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기밀문서가 생산되어 접수·발송되고 있음을 의미한다.²¹⁾ 일반과 기밀문서를 다 합친 수량을 20통을 1책으로 편철한 것으로 가정할 때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총독부 본부가 생산한 문서철만 해도 246만 5천여 책에 달한다. (이승일 2005, 213) 여기에 총독부 소속기관과 각도 이하까지 합산할 경우 패전 직후 조선총독부의 공문서 폐기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철저한 계획하에 대대적으로 실행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표 1> 1940년대 초 조선총독부의 기밀문서 수발 현황

구분	수수(收受)		발송		계		1일평균	
	1941	1940	1941	1940	1941	1940	1941	1940
관방	6,538	8,032	8,282	9,111	14,820	17,143	69.0	37
내무국	2,132	7,086	2,321	6,703	4,453	13,798	21.0	45

21) 총독관방 문서과는 이러한 기밀문서의 '급증된 수치'를 근거로 총괄담당자인 문서과장의 과중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이미 고용한 촉탁 1명 외에 추가로 촉탁 2명과 '고위' 4명을 합해서 모두 6명의 증원을 제국의회에 요청하고 있다.

재무국	354	3,109	431	12,803	785	23,914	3.7	96
식산국	2,086	7,149	2,159	37,719	4,245	94,869	20.0	316
농림국	585	2,546	901	12,230	1,486	24,766	7.0	85
법무국	630	7,493	710	7,204	1,340	14,697	6.3	48
학무국	436	4,417	621	10,037	1,057	14,474	5.0	48
경무국	1,256		2,560		3,816		18.0	
외사부	345	3,299	368	7,248	713	10,547	3.4	35
기획부	2,896	8,311	3,676	9,289	6,572	17,600	31.0	38
철도국	1,387		1,585		2,972		14.0	
체신국	682		760		1,442		6.8	
전매국	128		124		252		1.2	
계	9,455	131,432	24,498	111,359	43,953	234,807	206.4	778

* 출전 : 소화16년 제79회 제국의회설명자료(관방문서) 304-307에서 작성(민족문제연구원 소편 『일제하 전시체제기 정책사료총서』 제6권)

* 1941년은 '기밀문서', 1940년은 '극비문서' 대상 통계임. 여기에서는 「기밀문서규정」 제정 이전의 '극비문서' 대부분이 '기밀문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함.

4. 경찰서의 비밀문서 유형

1) 평안남도 경찰서의 비밀문서

이 장에서는 지방의 경찰서 처무규정을 통해 식민지 경찰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생산·보존해야 할 비밀문서의 유형과 보존기간 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총독부 경무국과 각도 경찰부 단위 상급 레벨에서의 '문서편철' 규정을 알 수 없는 현실에서 당시 경찰서의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보존되는 비밀문서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경찰 처무규정 중에서 평안남도, 전라남도, 충청북도의 경찰서 사례가 비밀문서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평안남도는 『도예규집』, 전라남도 와 충청북도는 『경찰예규취』에서 경찰서 처무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²²⁾ 이들 자료는 식민지 경찰 당국이 비밀문서에 대한 통일된 관리 방침을 일관

되게 적용하고 있으며 일반 기록과 마찬가지로 보존기간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곧 비밀문서 또한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 관리되는 대상이며 '필요가 없어지는 때에 임의적으로 소각'되는 대상이 아닌 것이다.

평안남도의 「경찰서 처무규정」에 제시된 「문서부책종목표」에는 각 계별로 생산·관리하는 '문서부책' 마다 보존기간과 비밀취급 여부(要否), 색인요부, 비치장소 등을 기재하해 놓았다. '인사, 회계, 고등경찰, 행정, 사법' 등 경찰서 내 계 단위 조직 중에서 고등경찰과 사법만을 <표 2>로 정리하였다. 사법계에서는 '1·2·3·5·10·20·영구·공소시효완성' 등의 보존기간을, 고등경찰은 '1·3·5·10·영구'의 보존기한을 적용하고 있다.

<표 2> 평안남도 경찰서 문서부책종목표

구분	보존기간	비밀취급 문서
고등경찰	5년	요주의인삭제명부, 단체명부삭제명부, 유학생명부삭제명부, 외국인명부삭제명부, 간행물차압명령철
	10년	고등경찰관계서류철, 고등경찰관계 수사수배서류철, 요시찰요주의인수배철, 신문잡지출판물관계서류철, 외국여권관계서류철, 고등경찰관계통계서류철
	영구	요시찰인원부, 해제요시찰인명부, 내지편입요시찰조선인명부, 요시찰조선인 외국도항명부, 동 삭제명부, 요시찰인약명부, 요주의인명부, 단체명부, 신사종교명부, 학교사숙명부, 유학생명부, 외국인명부, 귀순자명부, 고등경찰관계 재류금지명부, 화상총회명부, 신문통신사 및 지국명부, 통신기자 및 통신원특파원명부, 지명자명부, 고등경찰관계예규서류철, 신문잡지출판물 예규서류철, 외국여권 예규서류철
사법	3년	전과자형사시찰인관계서류철
	5년	불량청소년소녀서류철
	영구	형사시찰인명부, 전과자명부, 불량청소년소녀시찰부

* 출전 : 「경찰서처무규정」 1929년(소화4년) 10월 도훈 제21호, 『평안남도예규집』

22) 현재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자료들은 대부분 1920년대와 1930년대 초에 제정 또는 개정된 것으로 국가총동원기 이후 일제 말기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총동원법이 제정되고 식민지 조선에 국민총동원령이 발동되는 1930년대 후반 이후의 비밀업무와 비밀문서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 중의 하나이다.

평안남도의 경우 다른 지방의 경찰서에 비해 고등경찰계에서 생산·보존하는 영구문서의 종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에서 특징을 보인다. 각 경찰서가 위치한 지역적인 환경이나 요인 등과도 상관이 있다고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보다 자세한 이유를 알 수 없다. 고등경찰 업무와 관련한 각 예규철, 요시찰인 원부와 명부, 각 단체명부 등을 영구로 하는 점에서는 여타 경찰서와 비슷하다.

2) 전라남도 경찰서의 비밀문서

전라남도는 ‘문서부책종목표’ 자체가 처음부터 ‘보통’과 ‘비(秘)’로 구분되어 작성되어 있어서, 경무·고등·보안·사법·위생 등 경찰서의 계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산·관리되는 일반문서와 비밀문서의 각종 부책(簿冊) 현황과 보존기간 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각 계별로 ‘부책명-보존기간-색인 요부-비치장소(경찰서, 파출소, 주재소 등)’가 순차적으로 표시되었는데, 사법계를 제외하고는 1년·3년·5년·10년·영년 등 5종의 보존기간을 적용하고 있다.²³⁾ 경무계, 고등계, 보안계의 ‘비(秘)문서부책종목표’를 정리한 것이 <표 3>인데, 경무계와 고등경찰계에 비밀 문서철이 많다.

<표 3> 전라남도 경찰서의 ‘비(秘)문서부책종목표’

조직	보존기간	문서철명
경무	1년	호구조사실시부
	3년	지시부, 비상소집관계서류철, 훈수부(訓授簿)
	10년	비(秘)문서건명부, 시령결재부, 직원진달상벌서류철, 퇴직자이력서철, 비(秘)경무관계서류철
	영년	관내지(管内誌), 직원이력서철, 호구조사부, 비(秘)예규서류철, 순사신분관계서류철, 퇴직순사신분관계서류철,

23) 사법계에서는 여기에도 7년, 20년, 30년 등의 보존기간을 추가로 적용하고 있다.

고등경찰	3년	고등경찰관계수사수배철, 고등경찰관계시찰서류철
	5년	단체관계서류철, 종교관계서류철
	10년	고등경찰관계서류, 간행물처분일람부, 간행물관계서류철, 정례보고통계서류철, 고등경찰특비(特秘)서류철
	영년	간행물치안명령철, 요시찰인원부, 요시찰인삭제명부, 고등경찰관계명부, 고등경찰관계삭제명부, 사립학교서당명부, 요시찰인사진및필적철
보안	3년	비(秘)보안관계서류철

* 출전 : 「경찰서처무규정」(1927년 1월 훈령 제1호), 『전라남도 경찰예규취』

〈표 3〉에서도 요시찰 대상 인물과 단체 관련된 명부나 원부 등을 영구보존하는 상황이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다만, 경무계에서 비밀업무 관련 『예규철』을 별도로 영구보존하고 『비밀문서건명부』를 10년 보존한다. 또 경무계 업무와 관련한 비밀문서철이 존재하며 이 역시 10년 보존한다. 이에 비해 보안계의 『비(秘)보안관계서류철』은 3년보존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하였다. 고등경찰계의 『고등경찰특비(特秘)서류철』은 일반적인 비밀 구분인 ‘기밀-극비-비’ 외에도 ‘특비’ 유형이 있음을 알려준다. 아마도 ‘극비’ 이상의 중요문서철로 특정 인물이나 단체, 사건 관련 문서들을 편철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도 10년 보존한다.²⁴⁾

3) 충청북도 경찰서의 비밀문서

충청북도 사례는 『경찰예규취』에 「충청북도문서편찬보존규정」(1928년, 충북훈령을 제3호) 안에 ‘문서편찬부류목’, 그리고 「충청북도경찰서처무규정」(1925년 7월, 충북훈령을 제29호) 안에 ‘문서부책종류표’가 있어서 1925년과 1928년 규정을 내용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내용상 주목할 정도의 변화가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1928년의 ‘문서편찬부류목’의 고등경찰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정리해서 〈표 4〉로 제시하였다.²⁵⁾ 고등경찰계 업무를 ‘개

24) 고등경찰의 ‘특비’ 문서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인, 단체, 출판, 고등경찰잡건'로 나누었는데, 여타 경찰서와 달리 고등경찰 계 업무와 관련한 모든 문서철을 '비밀'로 구분하였다. 개인, 단체, 출판 관련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를 '고등경찰잡건'으로 구분한 점도 특이한데 내용상 계 단위에서의 서무 업무로 생각된다. 일부 한시적인 '정보'나 '수사'를 제외하고는 10년 이상으로 보존기간을 상향 책정하고 있어서 전라남도 경찰서에 비해 영구보존하는 비밀문서철이 많다.

〈표 4〉 충청북도 경찰서 문서부채종류표(고등경찰)

類 구분	보존기간	문서철명(1928년)
개인	10년	공무원, 요시찰인, 요주의안, 유학생, 외국인
	영구	고등경찰개인예규, 요시찰인원부, 내지편입요시찰인원부, 요시찰 조선인외국도항자명부, 유학생명부, 외국인명부, 요시찰인사진필적철
단체	10년	불온운동, 신사종교, 종교유사단체, 소작쟁의, 집회결사사중운동, 학교, 서당
	영구	고등경찰단체예규, 신사종교명부, 단체명부
출판	3년	간행물차압명령철
	10년	출판물
	영구	신문잡지사지국및기자통신원명부, 차압간행물색인부, 고등경찰출판물예규
고등경찰잡건	3년	고등경찰정보철, 고등경찰수사통보철
	10년	고등경찰잡건
	영구	고등경찰잡예규, 고등경찰폐멸예규, 고등경찰삭제명부, 문서건명부

* 「충청북도 문서편찬보존규정」 1928년(소화 3년) 충북훈령을 제29호, 『충청북도 경찰예규취』

이상에서 지방의 경찰서 처무규정 검토를 통해 일선 경찰서의 경무계와 고등경찰계가 수행하는 업무 특성상 비밀로 관리되는 많은 문서철의 존재

25) 평안남도과 전라남도 경찰서는, 보존기간 표시 방식에서 한시보존 문서만을 표시하고 '영구' 보존기간 항목은 비워놓는 '기표' 방식이어서 약간의 부정확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비해 충청북도의 경우는 공란 없이 모든 보존기간을 분명히 표기하고 있어서 자료상의 신뢰성이 높다.

와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10년 이상으로 보존 관리됨을 확인하였다. 가장 많은 유형으로는 업무 관련 예규철, 요시찰 대상의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명부 또는 원부 등이었으며, 비밀문서의 문서건명부도 보통의 일반문서와 똑 같이 10년 보존 이상이였다. 충청북도 경찰서 고등경찰계에서는 영구보존으로 책정하였다.

총독부 경무국이나 도 경찰부의 경우도 총독부 본부와 같이 '상위 레벨' 기관의 '편찬유별 및 보존종별'을 알려주는 규정 또한 지금까지 찾아지지 않는다. 하지만, 일선 경찰서 처무규정 사례를 통해 상급 기관에서의 비밀 문서철 유형과 보존기간 정도를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일반기록의 사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충청북도 경찰서 처무규정에 의하면, 일반기록 중에서 문서계의 『문서건명부』, 『법령공포번호부』, 『문서대장』, 경무계의 『기록대장』 등은 모두 갑종(영구)이다. 함경북도 지사관방에서는 『비(秘)문서건명부』와 『문서건명부』를 갑종, 『기밀관계서류』는 을종, 『기밀 문서교부부』는 정종으로 구분하였다. 여타 도 단위 지방예규에서도 비슷하게 구분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의 위계와 상관없이 잔존된 총독부 기록에서는 '정상적이라면' 반드시 존재해야 할 '총괄목록류'는 하나도 찾을 수 없다. 당시 식민통치 기관들이 생산하고 보유했어야 할 기록관리 도구로서의 문서건명부, 기록대장, 문서대장 모두 마찬가지이다.

5. 맺음말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조선에서 '총독부에 의한 대대적인 기록 정리와 폐기가 시작되었다'는 짤막한 '증언' 외에 어떤 종류의 기록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느 정도의 분량이, 언제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소각되고 폐기되었는지를 증거하는 '기록'은 현재까지 찾아지지 않는다.²⁶⁾ 이러한 현실 속

에서 필자는 일본 본토를 중심으로 식민지 대만과 조선이라는 동일한 일본 제국 공간 안에서 동일한 시기에 전시체제의 ‘공문서 정리와 폐기’, 곧 「결전비상조치요강」 제정(1944.2.25.)에 따른 ‘보유물자의 적극 활용’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들이 이루어졌음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일제의 비밀문서를 포함한 공문서 폐기 문제가 일본 제국 전역에서 지역적 환경과 상황적 요인에서 오는 ‘사소한 차이’는 있을지언정 동일한 대상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실행되었다는 ‘개연성’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또한, 일제의 기록 폐기가 패전 직후에 한해서 발생한 ‘일회적 행위’가 아니라 1930년을 전후로 식민지 조선에서의 총동원계획과 관련되어서 비밀문서 규정이 제정되기 시작했으며, 적어도 1945년 이전에 이미 보존기간의 감축과 소개에 따른 문서정리 등의 경험들이 축적된 사실을 규명하였다. 이는 이후 패전 직후의 대대적 소각으로 이어지는 예비적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본문에서는 대만 식민지와 일본 본토 아이치현 사례를 통해서 전쟁물자 동원을 위한 종이문서의 감축과 정리, 종이자원의 재활용, 미군의 폭격에 대비한 기록 소개 과정에서의 문서정리와 폐기 등의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실행되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이는 식민지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식민지 조선에서도 패전 직후 우선적 소각 대상으로 지시된 일본 본토의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기밀(비밀)문서들이 사라졌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기밀문서규정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정총동원 기밀’, ‘군자비’, ‘기밀취급’ 등의 표시가 있는 ‘기밀문서’가 잔존 총독부 기록 중에서는 찾아지지 않는 현상을 통해 ‘역으로’ 추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서 처무규정에 명시된 경무 및 고등경찰 관련의 보존기간 10년 이상의 다양한 내용과 유형의 비밀문서철은 물론이고, 조선총독부 처무규정의 내용상 영구보

26) 일제 패전기 경무(경찰) 관련 기록의 소각 폐기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경찰부 경제경찰과장이었던 쿠도 마스미(工藤真澄)의 ‘상당(분량) 소각했다’는 ‘증언’이 존재할 뿐이다. 당시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나 문서과장을 비롯한 소각 폐기와 직접 관련된 인물들의 증언 유무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존 대상이 분명한 문서건명부, 기록대장, 부책인계부 등, 그리고 총독부 기밀문서규정에 명시된 기밀문서작성보관부, 기밀문서보관총괄부 등의 총괄 목록류(또는 총괄대장류)가 전무한 총독부 기록의 잔존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는 동일한 제국의 외지였던 대만총독부의 잔존 기록과 비교하면 너무도 '단순 명료'해진다.²⁷⁾ 대략 1만 3천여 책의 대만총독부 기록에는 '수발건명부'(1,007책), '기록건명부'(317책), '영구보존총목록'(79책), '15년총목록'(41책)을 포함해서 한시기록에 대한 상당량의 '폐기문서목록'도 존재한다.(히야마 유키오 1997, 44; 2002, 292-298)

지금까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조선총독부의 총괄목록류의 부존재 현상은 잔존 총독부 기록의 성격과 특징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처무규정상 반드시 비치, 보존해야 할 이러한 총괄부책류가 '전무'하다는 사실로부터 일제의 공문서 폐기가 얼마나 철저한 계획하에서 실행되었는가를 짐작케 한다.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불가사의의한' 이러한 현상은, 조선총독부의 문서생산이나 보존 상황을 알 수 있는 문서 자체를 소각시킴으로써 총독부 업무 수행의 증거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적' 행위로부터 기인한다고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잔존된 총독부 기록이 일제의 통치와 침탈 관련 실상을 증거하는 '신뢰성 있는' 기록이 아니라는 점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특히 전신체제 기 일제의 기록 폐기를 둘러싼 기밀문서와 경무(경찰) 관계 비밀문서 등의 부존재 현상은 '잔존' 총독부 기록의 성격과 특성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아카이브의 '불균형 잔존총독부 기록'에 대한 정리, 이용 등 몇 가지 기본적 개선 사항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한다.

첫째, 다른 무엇보다도 잔존 총독부 기록에 대한 기초적인 기록 정보를

27) 대만총독부의 기록은 총독부 기록과는 편철 정리방식을 달리한다. 조직과 업무 기능에 따른 철별 편철 방식이 아니라 문목(門目) 분류하에 『공문류찬(公文類纂)』이라는 동일한 제목의 문서철로 편철되는 체제였다.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토대한 ‘올바른’ 정리·기술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국가기록원은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총독부 기록의 보존기간별 통계조차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 행정기관들로부터 ‘수집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총독부 기록에는 영구보존(갑종) 외에도 을종(10년보존)과 병종(3년보존)에 해당하는 문서철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1930년대 후반 이후의 문서철이 많다. 이는 패전으로 인해 한시보존 문서들에 대한 ‘폐기 처리’가 지연된 이유일 수 있겠지만, 동시에 전시체제기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 실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정황 증거일 수 있다. 곧 잔존 기록 중에서 1930년대 후반 이후의 갑종 문서철의 비중이 매우 적다는 현상을 함께 고려하면 패전 직후의 공문서 폐기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드시 이러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문서철과 관련한 당시의 ‘기록 분류’ 정보를 포함한 편철 질서 상태, 입수경로 등 보다 다양한 메타정보를 파악하여 국가아카이브가 소장하고 있는 ‘역사기록물’의 성격과 특징을 객관화하고 이용 서비스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기록원이 수행한 그동안의 총독부 기록과 관련한 편찬, 콘텐츠, 디지털화 등 많은 공적 업무 ‘성과’들이 내적 연관을 갖지 못하고 ‘분절적’으로만 기능하고 있다. 이는 ‘남겨진 아카이브’의 사료구조나 내용을 이해하는 ‘전문성’과 관련되는 문제로, 국가아카이브 정책이 아카이브에 기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선총독부컬렉션’은 총독부 관보, 강제연행자명부, 독립운동관련판결문 등을 함께 제공해주고 있는데, 잔존 총독부기록과 관련해서는 2008년 12월 ‘현재까지’의 해제집 정보와 미완성 상태의 ‘기능분류’에 연동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머무르고 있다. 생산 맥락과 출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기록들의 집합물인 잔존 총독부 기록의 이용을 위해서는 ‘맥락정보’와 ‘배경정보’의 올바른 파악과 정리가 먼저 수행되어야 한다. 잔존하는 총독부 기록은 파편화에 따른 결락이 매우 심하기에 생산부서 또는 업무기능 일부를 주제로 하는 현재의 분류 방식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곽건홍 2005,

253) 특히 문서나 도면과 같은 유형 분류와 ‘임의적인 주제어’(사실은 철명이나 건명에 불과한) 검색을 혼합한 현재와 같은 검색 환경에서는 더욱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잔존 총독부 기록 중에서 1930년대 후반의 국가총동원체제하 식민지 조선인에 대한 동원·수탈과 관련한 기획·조정 업무를 수행한 총독관방 기획부의 자원과, 물자조정 제1과, 물자조정 제2과 등이 생산한 문서들을 출처별(과 또는 계)로 검색될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가기록원은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시절 인수받았던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기능분류’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개별 문서철에 대한 ‘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그것도 경무를 포함한 절반에 가까운 ‘일부’에는 해제집 정보만 제공된다. ‘조직변천연혁’ 등을 활용해서 ‘과 또는 계’ 단위의 당시 조직과 업무기능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분류틀’을 만들어서 그 하위에 문서철을 연계하면 총독부 기록의 결락성과 파편화 상황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다.²⁸⁾

셋째, 잔존하는 총독부 기록의 ‘결락성’을 보완해야 한다. 총독부 경무국 기록에는 경찰의 중요 정보 관련 기록이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고려대 도서관소장의 경성지방방법원 검사국의 기록에는 상당량의 경무국의 보고문서, 도 단위 경무부나 여러 지방의 경찰서의 정보보고 등이 편철되어 있다. 아카이브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과 민간기구들의 ‘역사 기록’에 대한 협업 구조를 체계화하고 이에 기반한 기록 정리 업무가 일상화되어야 한다. 기록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역사기록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 활동도 필요하다. 소장 기관별로 스스로를 분리하고 자기 기관의 잔존된 기록에 국한해서 추진되었던, 성과 지상주의에

28) 해당 분야 연구자들을 위해 잔존 기록의 내용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주제별 분류까지 하는 바라지 않는다. 부분적으로 보완할 점들이 보이지만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의 『조선총독부 공문서 종합목록집』(2005, 한울) 등을 활용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가 ‘방치’되는 모습에서 국가아카이브 전문직들의 아카이브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그 이면에 자리잡은 아카이브에 기반하지 않은 국가아카이브의 업무 수행 태도와 방식 등 한국 공공아카이브의 오랫동안 축적된 ‘적폐’의 무게를 느낀다.

근거한 ‘용역사업’ 방식의 지극히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기록 정리, 그에 기초한 디지털화로 이어지는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록물 정리 사업 관행’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 아카이브 부재의 한국에서 국가아카이브는 특히 ‘소장’ 기록에 한정된 기록 정리와 이용서비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국가기록원은 아카이브 기능을 가진 다양한 문화유산기관들과의 아카이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기록정보의 공동 활용과 이용서비스 제공 등의 본연의 업무활동을 통해 ‘역사기록’의 전면 공개와 이용을 목표로 설정하는 전향적 정책을 추진하고 실행해 가야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

이 논문은 지금까지 연구 주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일제의 공문서 폐기 문제를 조선총독부 기록이 가지는 ‘잔존적 성격과 특성’과 관련해서 ‘시론적’으로 논의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를 지닐 것이다. 그러나 비밀기록 규정이나 경찰서 처무규정 등 분석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총독부 기록에 대한 정부수립 이후의 기록관리 연혁 등을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특히, 일제의 공문서 소각과 폐기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기록관리 인식이나 관행들이 ‘효율성’이나 ‘행정상 필요’, 또는 관행이라는 다양한 명목과 형태로 한국의 현대 기록관리제도에도 ‘승계·온존’되었던 일부 정황들이 존재했던 점을 고려하면 일부나마 언급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후일을 기약한다.

〈참고문헌〉

- 곽건홍. 2005. 조선총독부 기록의 관리와 이용—경무국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엮음 『기록사료관리와 근대』, 진리탐구, 241-272.
- 김경남. 2014. 제국의 식민지·점령지 지배와 ‘전후보상’ 기록의 재인식—조선의 식민지 지배·보상처리 결재구조와 원본출처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39, 281-318.
- 김익한, 이원규, 이승휘, 조호연. 2005. 주제토론 : 식민지 기록의 기록학적 분석.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엮음 『기록사료관리와 근대』, 진리탐구, 305-346.
- 박성진. 2007. 식민지권력의 비밀기록 생산과 활용—현존 조선총독부 경무국 자료를 중심으로. 『조선총독부공문서』, 역사비평사, 280-315.

- 안자코 유카. 2006. 『조선총독부의 총동원체제 연구』(고려대학교 박사논문)
- 이경용. 2002. 『한국의 근현대 기록관리제도사 연구』(중앙대학교 박사논문)
- 이경용. 2005.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제도.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엮음 『기록사료관리와 근대』, 진리탐구, 39-88.
- 이승일. 2005. 조선총독부 공문서의 기록학적 평가-조선총독부 도시계획 관련 공문서 군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12 (『조선총독부공문서』 역사비평사) 196-241.
- 이승일. 2006. 조선총독부 공문서를 통해 본 식민지배의 양상-조선총독의 제령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71(『조선총독부공문서』 역사비평사) 250-279.
- 지수걸. 2005. 총론.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엮음 『기록사료관리와 근대』, 진리탐구, 9-35.
- 지수걸. 2006. 총설-일제하 지방행정 문서군 해제.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일제문서 해제-지방행정편 I』, i-X X iv.
- 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5. 『조선총독부 공문서 종합목록집』 서울: 한울.
- 가토 기요후미(加藤清文). 2002. 敗戦と公文書廃棄-植民地占領における実態. 『資料館研究紀要』, 33, 105-144.
- 가토 기요후미(加藤清文). 2005a. 喪われた記録-戦時下の公文書廃棄. 『国文学研究資料館紀要 ア-カイズ研究編』 1, 1-27.
- 가토 기요후미(加藤清文). 2005b. 植民地官庁の文書管理制度.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엮음 『기록사료관리와 근대』, 진리탐구, 89-140.
- 가토 기요후미(加藤清文). 2019. 敗戦時における公文書焼却の再検討-機密文書と兵事関係文書. 『国文学研究資料館紀要 ア-カイズ研究編』 15, 1-16.
- 곤도 다카키(近藤貴明). 2015. 陸軍人事資料制度にみる沖縄県所管の陸軍戦時名簿(陸軍兵籍簿の概観とその由来-陸軍省制定の「留守業務規程」と沖縄戦・終戦前後の混乱が与えた現存への影響-). 『沖縄県公文書館研究紀要』, 17, 45-57.
- 곤도 다카키(近藤貴明). 2016. 終戦前後における陸軍兵籍簿滅失の原因とその類型化-連隊区司令部における陸軍兵籍簿の大量焼却のケースを中心に. 『立命館平和研究』, 17, 55-64.
- 김경남(金慶南). 2011. 帝国と植民地における不均衡残存記録の構造と植民地支配の特徴-朝鮮總督府の山林資源記録を中心に. 『ア-カイズ学研究』, 15, 62-89.
- 나카노메 토오루(中野目哲), 쿠마모토 후미오(熊本史雄) 편. 2009. 『近代日本公文書管理制度資料集 中央行政機関編』, 岩田書院.
-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 1964. 『朝鮮終戦の記録-米ソ両軍の進駐と日本人の引揚』 巖南堂書店.
- 무라카미 카츠키코(村上勝彦). 1997. 韓国所在の朝鮮總督府文書. 『1940年代の東アジア : 文献解題』, 아시아경제연구소, 13-29.

- 아마모토 카즈시게(山本和重). 2004. 自治体史編纂と軍事史研究—15年戦争期の町村兵書書類を中心に—. 『季刊戦争責任研究』, 45, 31-39.
- 요시다 유타카(吉田裕). 1996. 公文書の焼却と隠匿. 『季刊戦争責任研究』, 14, 2-7.
- 우시키 유키오(丑木幸男). 2007. 兵事史料の形成と焼却—郡・町村文書を中心に. 『歴史評論』, 689, 52-69.
- 이무라 테츠오(井村哲郎). 1997. 総論. 『1940年代の東アジア：文献解題』, 아시아경제연구소, 1-11.
- 이무라 테츠오(井村哲郎) 편. 1997. 『1940年代の東アジア：文献解題』, 아시아경제연구소.
- 치바 이사오(千葉 功). 2015. 戦前期日本における公文書管理制度の展開とその問題「外務省記録」を中心に. 안도 마사히토(安藤正人) 외 편 『歴史学が問う公文書管理と情報公開』, 大月書店, 154-183.
- 키라 요시에(吉良芳恵). 2015. 徴兵忌避者と所在不明者—史料からどうせまるか. 荒川章二, 河西英通, 坂根嘉弘, 坂本悠一, 原田敬一編. 『日本の軍隊を知る—基礎知識編一』, 吉川弘文館, 2015, 30-49.
- 하라 츠요시(原剛). 1998. 陸海軍文書の焼却と残存. 『日本歴史』, 598, 56-58
- 하시모토 요(橋本陽). 2012. 町村役場における兵事係の記録管理. 『GCAS Report』, 1, 22-42.
- 히야마 유키오(檜山幸夫). 1997. 台湾植民地統治関係史料-台湾総督府文書を中心に. 『1940年代の東アジア：文献解題』, 아시아경제연구소, 31-60.
- 히야마 유키오(檜山幸夫). 2002. 台湾総督府の文書管理論. 『台湾総督府の史料学的研究—日本近代公文書研究叙説』, ゆまに書房, 237-313.
- 전라남도경찰부편. 1926. 『전라남도경찰예규집』
- 충청북도경찰부편. 1928. 『충청북도경찰예규집』
- 평안남도편. 1925. 『평안남도예규집』
- 함경북도편. 1925. 『함경북도예규집』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2020.12.30.15:30~17:30 접속)
<https://theme.archives.go.kr//next/government/viewMain.do>